

DS&ML센터 운영규정

□ 제정 : 2017.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관련 창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DS&ML)센터 (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BM 관련 콘텐츠 개발·장비 지원
2. ICBM 관련 교육 실시
3. 벤처 기업의 기술적 문제 자문
4. ICBM 관련 연구 용역
5.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ICBM관련 지원)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가 예비창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
2. 클라우드(Cloud)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
3. 빅데이터(Big Data)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
4. 모바일(Mobile)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
5. ICBM 관련 교육 수행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행정팀
3. 연구원 및 조교

제5조(센터장)

- ①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무전반을 통할한다.

제6조(행정팀)

- ① 행정팀장은 본교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행정팀 내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 등)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재 정

제8조(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본교의 지원금
3. 센터사업에 관하여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지원금
4. 기타 센터사업 수입금

제9조(회계)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 결산 및 사업)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기금의 운영은 창업지원단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세부사항)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